예 산 총 칙

2010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78,593,395	17,357,802
일반회계	505,404,298	15,162,129
특별회계	73,189,097	2,195,673
공기업특별회계	64,099,124	1,922,97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4,311,960	729,35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709,227	621,277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9,077,937	572,338
기타특별회계	9,089,973	272,699
강릉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272,685	8,181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16,500	12,495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2,518,792	75,564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925,800	87,774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484,000	14,520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2,444,650	73,340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특별회계	27,546	826

제 2 조 201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0년도 계속비이월사업조서는 별첨 "계속비사업 이월조서"와 같다.

제 4 조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4,212,227 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2010년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3,900,000 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비목 및 채무상환원리금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는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 8 조 (간주처리) 회계년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 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